

1. 파주시설게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파주시의 자문에 응할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,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적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('99. 10. 30. 대통령령 제16591호)으로 근거조문을 법령에 맞게 수정(안 제1조)
- 설계자문의 대상을 규정한 근거조문의 변경으로 일부를 삭제(안 제3조 제1호, 제2호)
- 잘못 표기된 법령 “국가계약법 시행령”을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”으로 변경(안 제3조 제3호, 제4호)
- 설계등 자문대상공사의 범위중 설계변경으로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 대상으로 제외(제6조 제1호)
또한 총 공사비가 일정규모 이상 증액되는 공사로 규정하던 것을 감액되는 공사도 포함토록 개정(안 제6조 제4호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파주시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

- 동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(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)의 개정으로 상치되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참고로 시에서는 그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등 총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위촉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중에 있음